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2014. 7.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현황	1
II. 평 가	2
III. 개선 방안	3
1. 인가제도 개선	3
가. 인가·등록 업무단위 개편	3
나. 대주주 관련 요건 합리화	7
다. 기타 규제 정비	8
2. 인가절차 정비	9
3. 인가정책 보완	10
IV. 향후 추진계획	13
【참고1】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업무단위	14
【참고2】 업무단위 조합 ‘일괄 인가제’ 개요	15
【참고3】 자산운용사 성장경로(안)	16

I.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현황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단위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총 48종으로 분류
 - 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신탁업은 42종의 인가단위 운영
 - 투자자문·일임업의 경우 6종의 등록단위 운영
- 현행 인가·등록 체계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업 진입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목적
 - 증권사 등 전업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영역에 전문화·특화하거나, 업무단위 추가(add-on)를 통해 영업 영역 확장 가능
 - 은행 등 겸업 금융투자업자는 필요한 겸영·부수 업무에 한해 금융투자업 영위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업무단위 개황 (→참고1)

업종	금융투자상품	단위	유형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33종	인가 (42종)
	▶ 장내파생 / 주권기초		
	▶ 장외파생 /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등		
집합투자업	▶ 모든 펀드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5종	
신탁업	▶ 모든 신탁재산 / 금전만신탁, 금전제외신탁 등	4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증권·파생·부동산·예치금 / 증권·파생·예치금, 부동산·예치금	6종	등록 (6종)

-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 인가정책'을 수립·운영

【참고】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

- ▶ 금융투자회사 신설, 업무단위 추가로 인해 시장리스크 증가와 감독상 우려가 크지 않을 것
- ▶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고 투자자 편의를 제고할 것
- ▶ 기존 회사의 수익 다변화와 시장내 공정경쟁을 촉진할 것

II. 평 가

□ '기능별 규율' 원칙에 따른 **현행 인가제도는 규제차익을 최소화**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

□ 다만, **전문화·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

○ 자산운용사의 경우 **전문화·특화**사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 중심의 유사한 **영업모델로 경쟁**하는 시장구조 하에서 **전문화·특화**가 상대적으로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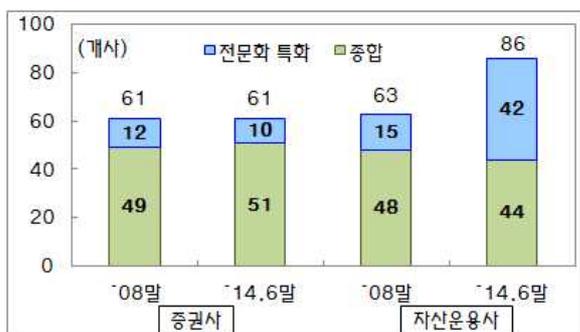
* 전체 자산운용사중 전문화·특화사 비중(%) : ('08말)23.8 → ('14.6말)48.8

* 전체 증권사중 전문화·특화사 비중(%) : ('08말)19.7 → ('14.6말)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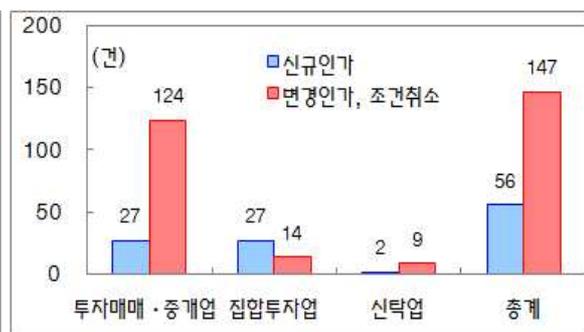
□ 오히려,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 업무단위, 인가 소요기간(통상 7~8개월), 인가 반납시 재취득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저해**

* '09.2월~'14.6월간 금융투자업 인가중 신규인가가 아닌 취급상품 범위 변경 인가 등(변경인가·조건취소)이 전체 인가건수(203건)의 72%(147건)에 이룸

전문화·특화 / 종합 금융투자회사수



신규인가·변경인가 건수('09.2월~'14.6월)



* 신규인가 : 금융투자업 진입시 최초 인가

* 변경인가·조건취소 : 인가단위 추가 등

➔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간소화하고 인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업 인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특화** 및 **사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

Ⅲ. 개선 방안

1 인가제도 개선

- ◇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체계를 개편하여 일정 업종 내에서의 취급상품 범위 조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
-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관련 요건을 합리화하고, 기타 인가 유지 및 폐지 등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
- ⇒ 시장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특화 및 사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가. 인가·등록 업무단위 개편

(1) 기본 방향

-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 적용
 -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add-on)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단,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인가제 유지

* 겸영금융투자업자 : 은행, 보험, 외국환중개회사 등

-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통합 가능한 인가 업무단위를 통폐합
 - * (투자매매업) 사채인수 업무단위 폐지 → 단위수 △1
 - (집합투자업)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 업무단위 통합 → 단위수 △1
- 합리적 범위 내에서 업무단위별 인가·등록시 요구되는 최저 자기자본 규모를 축소(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2) 업종별 개선 방안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투자중개업) 신규 진입시 현재와 같이 인가 → 진입 이후, 투자중개업내 업무단위 추가는 등록제로 전환
 - (투자매매업) 상품군(증권, 증권(인수제외), 장내파생, 장외파생)별로 신규 진입시 현재와 같이 인가 → 진입 이후, 상품군내 업무단위 추가는 등록제로 전환
- * 투자매매업은 금융투자업자의 자기계산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별로 인가 필요

【예시】 제도개선 효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업종	상품군	금융투자상품 개별 상품	자기자본 (일반투자자 기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	채무증권	30억원
		지분증권(집합제외)	10억원
		집합투자증권	10억원
	장내파생
	장외파생
집합투자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i) 최초 채권 투자중개업만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가 ii) 이후 지분·집합투자증권 등 여타 증권 투자중개업으로 업무 확대시,
- (현행) 업무 단위별 추가 인가 필요 → (개선) 등록만으로 가능

현 행	개 선
i) 채무증권 중개업 인가(①)	i) 채무증권 중개업 인가(①)
ii) 업무단위(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 중개업) 확대시 추가인가*(②~⑤)	ii) 업무단위(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 중개업) 확대시 등록*(②~⑤)
* 소요기간 : 최장 2~3년	* 소요기간 : 1년 이내

집합투자업

□ 자산운용업 성장 프로세스와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인가·등록 체계를 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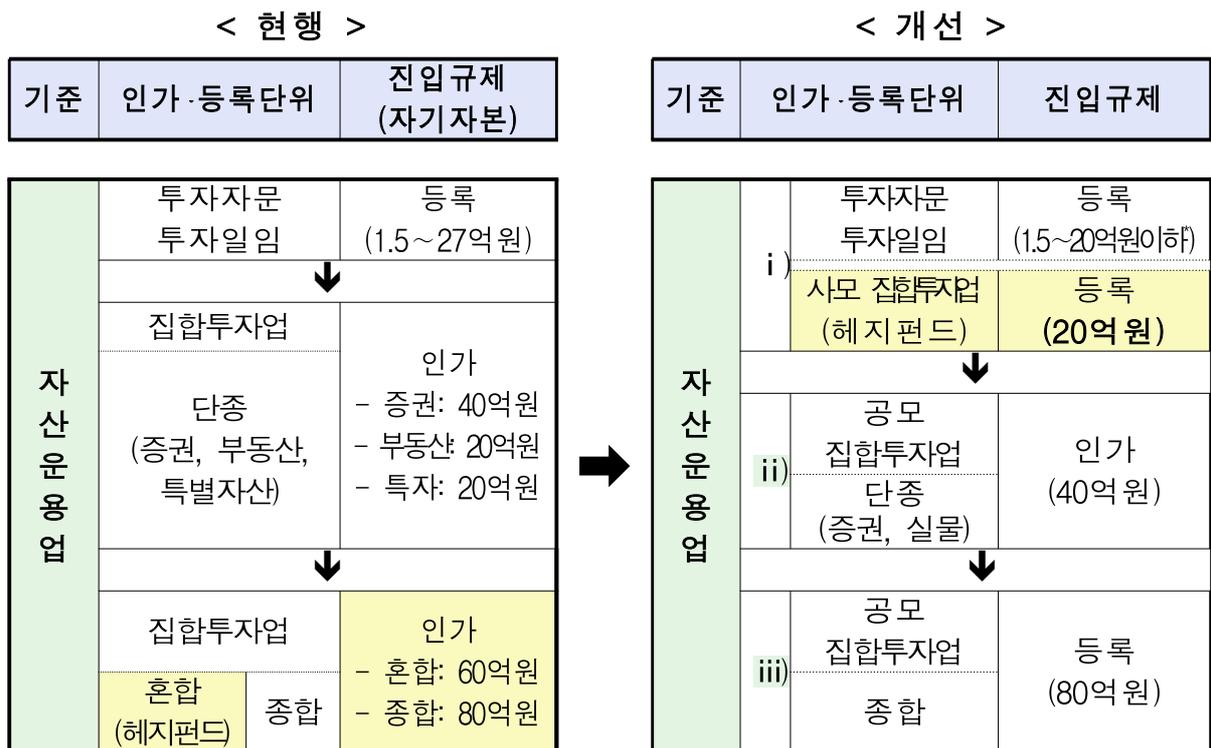
○ 투자자문·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제*,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영

*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인가 → 등록은 제도 개선 추진 중('14.4월 입법예고)

○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으로 종합 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add-on)할 수 있도록 허용

☞ [등록] 자문·일임업 또는 사모펀드 운용업(종합) → [인가] 공모펀드(단종 : 증권/실물*) → [등록] 공모펀드(종합)

* 부동산과 특별자산 펀드 인가 단위를 통합하여 현행 4단위(증권, 헤지, 부동산, 특자)인 인가 단위를 2단위(증권, 실물)로 대폭 축소



* 사모펀드운용업의 최저자기자본 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최저자기자본 규모도 완화 예정

-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 필요 추가 자본 규모도 대폭 완화
 - (현행) 증권단종(40억원) → 헤지 add-on(+60억원) → 부동산&특자 add-on(+40억원)을 통해 종합자산운용업 영위 : 총 140억원
 - (개선) 사모(20억원) → 증권단종 add-on(+20억원) → 부동산&특자 add-on(+40억원)을 통해 종합자산업 영위 : 총 80억원(△60억원)

신탁업

- 재산관리 및 보관의 특성, 취급상품의 차별성* 등을 감안할 때 상품간 상호 겸영이 부적절한 만큼 현행 상품단위별 인가를 유지
 - * 예시 :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 신탁업과 1:1 맞춤형 자산관리 목적 금전신탁업의 경우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려움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은 등록제로 운영 중 → 현행 유지
 - * 투자자문업·일임업은 '14.5월 현재 총 156개사가 등록중이며 진입·퇴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13년중 17개사 신규인가, 17개사 자진퇴출)
- 사모펀드운용업의 최저자기자본 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최저자기자본 규모도 완화

< 기대 효과 >

◇ 금융투자업 영위시 인가가 필요한 업무단위가 대폭 축소

* ATS투자매매업·중개업 및 장외채권중개 등 독립적 인가단위 제외시, 현행 39개 인가단위가 10개 인가 및 27개 하위 등록단위(2개 폐지)로 변경

◇ 업무단위 추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현재 7~8개월→2~3개월)

업종	금융투자상품	인가필요 단위
투자매매업	증권	①
	증권(인수제외)	②
	장내파생상품	③
	장외파생상품	④
투자중개업	증권	⑤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집합투자업	-	⑥
신탁업	-	⑦~⑩
ATS투자매매업, ATS투자중개업, 장외채권중개		독립 단위

나. 대주주 관련 요건 합리화

①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 조정(시행령 개정)

-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 → 불합리하게 대주주 결격 요인으로 작용

* 예시 : 친인척과 계열분리로 인해 상호간 독립경영을 하였으나, 친인척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에 진출 불가

- (개선)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이 공정위에서 확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

* 은행법 시행령은 계열분리로 인한 특수관계인 배제 조항을 기 반영

②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 완화(감독규정 개정)

- (현행)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 금융투자회사 신설, 인수 등의 인가가 제한

- (개선) 기관경고에 한해 동 제한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 단축

* 금융투자업은 타 금융업과 달리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과도한 경쟁 구조도 해소해 나갈 필요 → 제한기간 단축은 전반적인 인가제도 개선 취지에 부합

-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상위단계 중제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근 3년간' 조건을 유지

다. 기타 규제 정비

① 인가 행정관행으로 운영중인 숙려기간 폐지(숨은규제 개선)

- (현행) 인가절차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6개월간 인가 신청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운영
- (개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숙려기간을 폐지

② 인가·등록단위 자진 폐지후 재진입 제한 완화(감독규정 개정)

- (현행)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등록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 해당 업무단위에 대해 5년간 재진입을 제한
 - (개선) 보유중인 인가·등록단위 전체를 자진 폐지·매각하는 경우에만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하고, 사업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후 재신청 허용
- * 금융투자회사 매각후 신규진입 신청 등 '인가쇼핑'에 대한 재인가 제한은 유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자발적 사업구조조정 및 전문화·특화 지원

【참고】 인가단위 자진폐지시 5년간 진입금지 제한 관련

- ▶ (규제목적) '인가쇼핑'으로 인한 인가 남발, 무분별한 영업폐지 등 방지
- ▶ (평가) 대주주가 금융투자회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유형의 '인가쇼핑'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반면, 금융투자업자가 미영위 업무 단위도 계속 보유하도록 하여 사업 구조조정을 저해

③ 업무단위별 진출입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등록 최저 자기자본 미달시 인가·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단축(시행령 개정)

- * (현행) 특정 회계연도말 기준 인가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 미달시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유예 → (개선)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

2

인가절차 정비

◇ 인가 소요기간 단축, 세부 가이드라인 공개, 인가서류 간소화 등 인가절차 정비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부담 경감

① 인가→등록제 전환 예정인 상품 관련 업무단위 추가(add-on)에 대해서는 “Fast-track 인가” 시행

※ 동일업종내 업무단위 추가(add-on)는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이나, 관련 법령 개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신속히 인가받을 수 있는 Fast-track 절차를 마련하여 법령 개정전까지 운용

- (현행) 취급 상품이나 영업대상 투자자 추가시에도 금감원 심사 → 증선위 심의 → 금융위 예비·본인가 등 중층적 심사를 거침
- (개선) 취급 상품 추가 등 ‘변경 인가’ 신청시에는 등록제에 준하는 신속한 인가절차 운영

* 예비인가 생략 등을 통해 신청후 인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 (현행) 7~8개월 → (개선) 3~4개월

② 인가요건별 심사 가이드라인 공표

- (현행)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심가요건별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
- (개선)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심사 기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공표

* 전문인력 최소기준, 물적설비 점검사항, 사업계획 작성방식 등 포함

③ 인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 (현행)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다양한 서류(약 20종)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 발생
- (개선) 중복서류 제출 여부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은 최소화

- ◇ 現 인가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업종·업권별로 일부 조정·보완
- (투자매매업·중개업) 유사성이 크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인가 단위를 묶어 “일괄 인가제” 시행
 - (집합투자업) 자산운용사의 사업모델과 성장경로를 감안하여 “성장 단계별 인가 기준” 마련·시행

(1) 기본 방향

- ① 시장규모에 비하여 금융투자회사 수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현행 인가정책 기조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 업종별 영업특성과 사업모델 등을 감안하여 인가정책 일부 보완
- ② 인가정책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예 : 매년 1/4분기중)으로 ‘인가정책 방향’을 공표

<참고> 現 금융투자업 인가정책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사항
전업금융투자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화·특화 금융투자회사 신설 신청을 중심으로 심사 · 리스크 증가 소지,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투자자 편의 제고 등을 감안하여 심사 · 동일그룹내 전문화·특화 복수 금융투자회사 설립 허용
· 증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내 업무 추가 허용 · 신탁업 추가 허용
· 선물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 매매업·중개업 추가 허용 · 장외파생상품 매매업(제한적 허용)
· 자산운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펀드 운용사 진입 제한적 허용 · 부동산 운용사 진입 제한적 허용
경영금융투자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 등 추가 허용

[2] 업종·업권별 보완 방안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 상호 연관성이 큰 업무단위 조합의 '일괄 인가제(모듈형 인가제)' 시행 (→참고2)
 - (현행) 1~2개 업무단위를 인가받아 금융투자업에 진입
 - 그러나, 취급상품이 제한되고 원활한 영업이 곤란하여 추가 인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
 - (개선) 상호연관된 업무단위 조합(모듈) 별로 일괄 인가 실시
 - * 모듈 : 상호관련성이 높아 함께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가·등록단위 조합
- M&A 추진 증권사에 대하여 사모펀드 운용업과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 영위를 허용('13.12월, 「증권회사 M&A 촉진방안」)
 - * 개인연금신탁 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내 추진된 M&A에 한해 한시 허용

집합투자업

-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 인가 기준 마련 및 공표 (→참고3)
 - (현행) 자산운용사 성장 단계별 add-on 인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사업 진출이 제약
 - (개선) 자산운용사 사업 모델을 기준으로 성장 단계별 인가 기준을 마련
 - 증권펀드 운용사 경로, 실물펀드 운용사 경로, 자문·헤지펀드 운용사 경로 등 3가지 경로별 인가 기준 공표
 - 인가 기준은 업력, 수탁고*를 기준으로 하되, 공모펀드 진출시에는 필요시 금감원 검사**를 거쳐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점검 후 인가
 - * 싱가포르도 자산운용사의 단계별 인가 기준으로 업력, 수탁고, 평판 등을 활용
 - ** 인가 신청 전 1년내 검사를 받은 경우 추가 검사 필요 없음

겸영 금융투자업자

- (보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손보사의 금전신탁 겸영 허용

선물업자

- 선물사의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 범위를 확대
 - (현행) 상품(commodity)에 한정된 장외 파생거래 중개를 허용
 - (개선) 상품 뿐만 아니라, 통화·이자율·신용 기초 장외 파생거래 중개도 허용

◇ 아울러, 금융투자업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정책상 인센티브 제공

- ① 인가 신청시 '신규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필수 제출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인가후 6개월내 보고토록 의무화

* 인력확보, 사업계획상 인력 양성계획 등 심사과정에서 검토

- ②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평가되는 신청건은 우선적으로 심사

IV. 향후 추진계획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소관
① 인가제도 개선			
· 인가·등록 업무단위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14.하반기	금융위
·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 조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4.하반기	금융위
·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4.하반기	금융위
· 숙려기간 폐지	행정조치	'14.9월	금감원
· 자진폐지후 재진입 제한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4.하반기	금융위
· 인가·등록 취소 유예기간 단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4.하반기	금융위
② 인가절차 정비			
· Fast-track 인가 시행	행정조치	'14.9월	금융위·금감원
· 인가요건별 심사 가이드라인 공표	가이드라인 공표	'14.9월	금감원
· 인가시 제출 서류 간소화	행정조치	'14.9월	금감원
③ 인가정책 보완			
· 투자매매·중개업 '일괄인가제' 시행	인가정책 조정	'14.9월	금융위·금감원
· 겸영금융투자업자 인가범위 확대	인가정책 조정	'14.하반기	금융위·금감원
· 선물사 투자중개업 업무범위 확대	인가정책 조정	'14.9월	금융위·금감원
· 일자리 창출 관련 인센티브 제공	인가정책 조정	'14.9월	금융위·금감원

참고1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업무단위

연번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투자자	자기 자본	체계개편후 인가필요단위
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전문	500	①
2			채무증권	일반+전문	200	
3			국공채	일반+전문	75	
4			지분(집합제외)	일반+전문	250	
5			집합투자증권	일반+전문	50	
6		증권(인수제외)		일반+전문	200	②
7			채무증권	일반+전문	80	
8			국공채	일반+전문	30	
9			사채	일반+전문	40	
10			지분(집합제외)	일반+전문	100	
11			집합투자증권	일반+전문	20	
12			RP대상증권	일반+전문	60	
13			증권(인수만)	채무증권 사채	일반+전문	
14	장내파생		일반+전문	100	③	
15		주권기초	일반+전문	50		
16		장외파생		일반+전문	900	④
17			주권기초	일반+전문	450	
18	주권외기초		일반+전문	450		
19			통화·이자율기초	일반+전문	180	
20	투자매매업 (ATS)			전문	300	⑤
21	투자중개업 (RP중개)	증권 (증권)		일반+전문	30	⑥
22				전문	5	
23			채무증권	일반+전문	10	
24			지분(집합제외)	일반+전문	10	
25			집합투자증권	일반+전문	10	
26		장내파생		일반+전문	20	
27			주권기초	일반+전문	10	
28		장외파생		일반+전문	100	
29			주권기초	일반+전문	50	
30			주권외기초	일반+전문	50	
31			통화·이자율기초	일반+전문	20	
32	투자중개업 (ATS)			전문	200	⑦
33	투자중개업 (장외채권중개)	증권	채무증권	전문	30	⑧
34	집합투자업	모든펀드		일반+전문	80	⑨
35			증권펀드(MMF포함)	일반+전문	40	
36			부동산펀드	일반+전문	20	
37			특별자산펀드	일반+전문	20	
38			혼합자산펀드	일반+전문	60	
39	신탁업	모든 신탁재산		일반+전문	250	⑩
40			금전만신탁	일반+전문	130	⑪
41			금전제외신탁	일반+전문	120	⑫
42			부동산신탁	일반+전문	100	⑬
43	투자자문업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예치금		일반+전문	8	
44			증권, 파생상품, 예치금	일반+전문	5	
45			부동산, 예치금	일반+전문	3	
46	투자일임업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예치금		일반+전문	27	
47			증권, 파생상품, 예치금	일반+전문	15	
48			부동산, 예치금	일반+전문	12	

* 현재 1~42번 단위는 '인가제', 43~48번 단위는 "등록제"로 운영 중

* 체계 개편후 : 인가필요 업무단위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 전환

참고2

업무단위 조합 '일괄 인가제'(모듈형 인가제) 개요

① 업무단위 조합(모듈, Module)의 개념

- 상호 연관성이 높아 함께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가·등록 업무 단위의 조합

② 업무단위 조합 일괄인가제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 신규 인가시, 상호 연관된 업무단위 조합을 일괄적으로 인가

③ 업무단위 조합 (예시)

- 사업 전문화·특화

업무 성격	인가·등록 업무단위		최소 필요자본
	필수	선택가능	
①중개업(Brokerage)	· 투자중개(증권) · 투자중개(장내파생)	· 투자자문 · 투자일임	50억원
②소형 자산관리업	· ①의 업무단위 · 투자매매 (증권, 인수제외) · 투자매매(장내파생)	-	350억원
③전통적 IB	· ①, ②의 업무단위 · 투자매매 (증권, 인수포함) · 장외파생 매매·중개	· 집합투자업(사모)	1,650억원

- 상품별 전문화·특화

업무 성격	인가·등록 업무단위		최소 필요자본
	필수	선택가능	
①주식 매매·중개	· 투자중개(주식) · 투자매매(주식)	· 투자자문(주식) · 투자일임(주식)	110억원
②장내파생 매매·중개	· 투자중개(장내파생) · 투자매매(장내파생)	· 투자자문(파생) · 투자일임(파생)	120억원

참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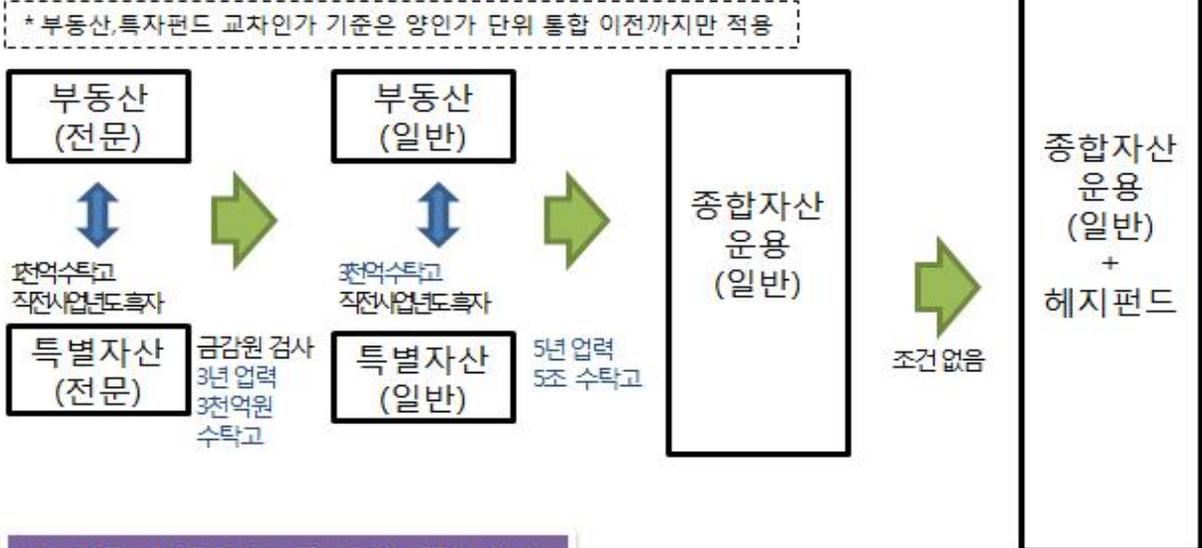
자산운용사 성장경로(안)

◇ 사업 초기 기관투자자의 수탁금 없이 자생하기 어려운 영업 모델 감안시, 원스톱(One-stop)인가 보다는 특정 분야에서의 운용 평판을 쌓은 후 단계적으로 인가를 확대하는 **성장형 인가 모델**이 바람직

1. 증권펀드 운용사 성장경로



2. 실물펀드 운용사 성장경로



3. 자문.헤지펀드 운용사 성장경로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운용업 등록 단위 신설시 새로운 단계별 성장경로 마련